의 안 번 호

2366

[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12. 2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2. 2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6.(월)

2. 제안이유

○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 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를 "713명"에서 "716명"으로 3명 증원, 집행기관의 정원을 "689명"에서 "692명"으로 3명 증원(안 제2조)
-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 3)
 - 1) 총 계: 713명 → 716명(증 3명)
 - 2) 일반직: 710명 → 713명(증 3명)

가) 6급 이하: 657명 → 660명(증 3명)

4. 근거법규

- ○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 사항 검토한 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내용 중 일반직 6급이하 증 3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함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- 2. 삭제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 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

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